

제404회 임시회
'22. 10. 17.(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년 10월 5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2일

3. 제안사유

-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출연개요

연번	대상기관	출연목적 및 필요성	출연금액 (단위:천원)	관계법령 (출연근거)
1	충북 연구원	-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및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 연구 를 위해 설립된 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4,370,000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2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 지방 행정재정 발전 등에 필요한 연 구조사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250,00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제3항
3	지방 공기업 평가원	-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 행과 기관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각종 지원 사업 추진 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60,000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4	한국 지방세 연구원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 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지원 필요	181,577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5. 주요내용

① 충북연구원 운영 출연금 지원 : 4,37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연구를 위해 설립·운영되는 (재)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 : 250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 ※ 17개 시·도 공동 출연사업

③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지원: 60백만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연구,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경영평가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비 지원
- ※ 17개 시·도 공동 출연

④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 182백만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
-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

6.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대진)

① 충북연구원

가. 충북연구원 현황

- 충북연구원은 충청북도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된 제 부문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 및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통하여 충북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현재 충북연구원장 1명, 연구직 30명, 일반직 12명으로 총 43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음(2022년 9월 기준).

<최근 5년간 충북연구원 인력 현황>

(단위 : 명)

년도	구분	구분	정원	현원	비고
2018년		원장	1	1	39/35
		연구직	28	27	
		일반직	10	7	
2019년		원장	1	1	41/35
		연구직	30	27	
		일반직	10	7	
2020년		원장	1	1	43/42
		연구직	30	30	
		일반직	12	11	
2021년		원장	1	1	43/43
		연구직	30	30	
		일반직	12	12	
2022년 9월 현재		원장	1	1	46/43
		연구직	33	30	
		일반직	12	12	

- 2022년 예산은 출연금과 자체수입 등 61억 7백만원이며, 10월 6일 기준 현재 154건의 연구를 수행해 연구원 1인 평균 5.13건의 연구실적을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 충북연구원의 연구실적은 총 692건으로, 기본과제 120건, 창의·기획과제 84건, 정책과제 275건, 수탁과제 213건임.

〈충북연구원 연도별 연구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년도	계	1인평균 수행건수	기본과제	창의·기획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2018년	114	4.22	21	10	51	32
2019년	145	5.37	25	13	60	47
2020년	132	4.4	24	25	53	30
2021년	147	4.9	25	18	55	49
2022년	154(86)	5.13	25(25)	18(18)	56(16)	55(27)
합 계	692(86)	평균 4.8	120(25)	84(18)	275(16)	213(27)

※ ()는 진행과제 건수, 과제건수는 2022. 10. 6 기준

나. 주요내용 검토

- 충청북도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2항¹⁾과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²⁾에 근거를 두고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

1)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2) 제6조(운영경비) 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충북연구원은 충북 지역의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종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며 도정 발전에 기여해 왔음.
- 충북연구원의 최근 4년간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 47억 2천 9백만원으로 증가하였음.

<충북연구원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충북연구원 운영	4,000,000	4,000,000	4,050,000	4,379,901	4,040,000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	400,000	400,000	400,000	350,000	330,000
출연금 계	4,400,000	4,400,000	4,450,000	4,729,901	4,370,000

- 2023년도 충북연구원의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9.7%(5억 4천만원) 감소한 55억 6천 6백만원으로 예상되며, 충청북도 출연금도 43억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5.5%(3억 5천 9백만원) 감소할 것으로 보임.

<충북연구원 202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1) 세입 개요 (자체수입 + 출연금)

(단위 : 천원)

과 목		2023년	2022년	증감
합	계	5,566,974	6,107,279	-540,305
자체수입	소 계	1,526,974	1,727,378	-200,404
	예금이자수익	9,000	9,000	0
	수탁과제전입금	741,468	699,899	41,569
	보조사업전입금	42,241	42,241	0
	공투센터전입금수익	21,096	63,142	-42,046
	기금이자전입금수익	70,658	44,040	26,618
	기타영업외수익	2,511	2,511	0
	순세계잉여금	640,000	866,545	-226,545
의존수입	출연금	4,040,000	4,379,901	-339,901

2) 세출 개요 (필요경비)

(단위 : 천원)

과 목			2023년	2022년	증감
합 계			5,566,974	6,107,279	-540,305
사 업 비 용	목적사업비	소 계	755,803	1,116,736	-360,933
		자 체 사 업	423,700	583,000	-159,300
		기 획 사 업	332,103	533,736	-201,633
	일반관리비	소 계	4,758,719	4,911,465	-152,746
		인 건 비	3,391,773	3,496,559	-104,786
		물 건 비	1,354,946	1,402,906	-47,960
		경 상 이 전	12,000	12,000	0
	예 비 비	예 비 비	38,189	45,998	-7,809
자 본 적 출 지	공기구비품	자 산 취 득 비	14,263	33,080	-18,817

다. 종합 검토의견

- 충북연구원은 충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연구를 통해 충북발전을 견인하는 등 충청북도의 씽크탱크(Think Tank)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다져온 기관으로 출연은 필요함.
- 다만, 정부 및 충북도 방침에 따른 경비성 예산 절감으로 출연금이 감액된 만큼 향후 연구과제 만족도를 높여 수탁과제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이 요구됨.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³⁾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 등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출연금 분담에 대한 대응으로 충청북도가 요청하는 분야의 협력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출연금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정책과제연구와 정책이슈리포트를 지원하고 있음.

<정책과제연구 및 정책이슈리포트 수행 현황>

구분	연도	과 제 명
정책 연구 과제	2018	충청북도 지역공동체활성화 추진방안 연구(지역공동체과)
	2019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관리 구축 방안 연구(회계과)
	2020	농민수당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농업정책과)
	2021	정부 추가 특례 시군구 선정기준 관련 대응 방안 연구(자치행정과)
	2022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정책기획관) -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률 향상방안 연구(정책기획관)
정책 이슈 리포트	2018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글로벌 방산기업 유치방안(경제자유구역청)
	2019	생활SOC 정책의 긍정적 효과(사례) 및 효율적 운영방안(정책기획관)
	2020	청년수당 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 및 실질적·효율적 지원 방안(청년정책담당관)
	2021	충북형 보통교부세 산정수요 발굴 및 교부세 확충 방안(예산담당관)
	2022	소방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소방본부 대응총괄과)

○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균등분담금을 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중앙-지방간 상생균형적 발전을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위한 역할 수행 등을 고려할 때 출연은 필요함.

- 다만, 시·도별 재정력, 인구수, 시·군수 등이 상이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각 250백만원을 출연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출연금	150	200	200	250	250	250	250	250

③ 지방공기업평가원

○ 법적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음.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본 출연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므로 출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종합의견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⁴⁾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2년 설립⁵⁾한 기관으로, 시·도별 재정력 지수(50%)와 평가대상 공기업 수(50%)를 감안하여 시·도별 일정비율의 출연금을 매년 출연하고 있음.
- 충청북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와 임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2012),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관화 및 “지방공기업평가원” 설립(2016)

참고1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현황

□ 2023년 출연금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시·도	출연금액 (A+B)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충청북도	60	0.596	2	30	19	2	30

※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공기업수(공사·공단, 시군상하수도)

□ 2023년도 시도별 출연금 배분 내역

(단위: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2022	2023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08	1,008	-	10.4551	-	510	375	-	498
서울특별시	78	78	-	1.3864	4	42	32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601	3	36	9	1	24
대구광역시	54	60	+6	0.7085	3	36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8020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6157	2	30	9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6007	2	30	6	1	24
울산광역시	60	54	△6	0.6987	2	30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0305	4	42	97	4	42
강원도	60	60	-	0.4930	1	24	29	3	36
충청북도	60	60	-	0.5966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6464	2	30	33	3	36
전라북도	54	54	-	0.4662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	0.4446	1	24	18	2	30
경상북도	66	66	-	0.4857	1	24	39	4	42
경상남도	72	72	-	0.7200	3	36	35	3	36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 금액산정 기준 : 2구간(30백만원) 기준으로 20%씩 차등(6백만원) 적용

□ 연도별 충청북도 출연 금액

(단위: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출연금	60	60	60	60	60	60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임.

○ 출연금 산출 대상인 보통세 세입의 증가에 따라, 출연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산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2020회계연도 이전 0.015%, 2021년 0.013%, 2022년부터 0.012%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0.9.8. 일부개정, 2021.1.1. 시행)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도(A)	85	80	102	118	121	129	138	140	159	
충북(B)	193	190	227	256	273	285	310	306	305	
전국(C)	7,712	7,137	8,267	7,570	12,102	10,844	11,392	10,822	13,797	
비율	A/C	1.10%	1.12%	1.23%	1.56%	1%	1.19%	1.21%	1.29%	1.11%
	B/C	2.50%	2.66%	2.75%	3.38%	2.26%	2.63%	2.72%	2.83%	2.21%

<충청북도 출연금 배분 내역>

(단위: 천원)

자치단체명	① '21년 결산 지방세	② '21년 결산 보통세	'23년 출연금 (②*1.2/10000)
충북도 소계	3,149,318,274	2,901,481,421	348,179
충북도 본청	1,760,945,705	1,513,138,733	181,577
청주시	700,219,127	700,202,590	84,024
충주시	157,257,294	157,256,335	18,871
제천시	95,250,731	95,250,124	11,430
보은군	26,984,341	26,984,283	3,238
옥천군	37,182,879	37,182,815	4,462
영동군	29,901,573	29,901,573	3,588
증평군	34,871,701	34,871,348	4,185
진천군	119,605,374	119,605,353	14,353
괴산군	28,128,230	28,126,650	3,375
음성군	130,990,824	130,981,171	15,718
단양군	27,980,495	27,980,446	3,358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